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희망의 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7월 3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30(목) 23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다자통상협력과 김진 과장(044-203-5640), 박윤주 주무관(044-203-5646)

세계무역기구(WTO) 회원국 중 9번째로 무역원활화협정 수락서 기탁

- 협정 발효시 개도국의 통관절차 개선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 기대 -

□ 한국은 7.30일 세계무역기구(이하 WTO) **161개 회원국 중 9번째**로 **무역원활화 협정**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**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.**

* 「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」(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)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(붙임 참고)

* 7.30 기준 9개국(홍콩, 싱가포르, 미국, 모리셔스, 말레이시아, 일본, 호주, 보츠와나, 한국) 기탁

○ '04. 8.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, '13.12월(제9차 각료회의) 협상 타결, '14.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채택 이후, 정부는 동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*를 완료하였다.

* 무역원활화 협정문 국문번역 → 협정문 국문본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(5.18~6.6) → 법제처 심사(7월) → 국무회의 의결(7월) → 대통령 재가(7월)

□ 의정서는 **WTO 회원국 2/3(108개국)가 수락하는 날에 발효**된다.

○ 발효시에는 WTO 회원국, 특히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기대된다.

* 국제상의(ICC)·피터슨연구소(PIIE)(2013): 동 협정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수출 증가, 2천만 개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전망

*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(2015) :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한 잠재적 무역비용 감소 ⇨ 저소득 국가 14.5%, 중하소득 국가 15.5%, 중상소득 국가 13.7%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11.1%

○ 우리나라의 수락서 조기 제출은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의 신뢰 회복에도 이바지 할 전망이다.

<붙임> WTO 「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」 주요 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김진 과장(☎044-203-5640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WTO 「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」 주요 내용

□ Section Ⅰ : 이행 의무

구분	조항	주요내용
GATT 제10조 (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) 개선 및 명확화	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 가능성	수출입 관련 정보의 공표,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, 질의처 설치·유지 등
	제2조 의견제시 기회, 발효 전 정보 및 협의	법령 제·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 제공, 이해당사자간 협의 기회 제공 등
	제3조 사전심사	품목분류, 원산지 등에 대해 사전심사 요청, 사전심사 결정에 대해 재심 요청 등
	제4조 불복청구 또는 재심을 위한 절차	세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사법적·행정적 불복 청구권 보장
	제5조 공정성,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	제고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, 유치, 시험 절차 규정
GATT 제8조 (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) 개선 및 명확화	제6조 수출입 관련 수수료, 부과금, 벌금에 대한 규율	수출입 관련 수수료와 부과금에 대한 일반 규율 및 특별 규율, 벌금 규율
	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	도착 전 처리, 전자적 지급, 반출과 제세의 분리, 위험관리, 통관 후 심사, 평균 반출시간의 수립 및 공표,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, 특송 화물, 부패성 상품 관련 무역원활화 조치
	제8조 국경 기관 협력	무역원활화를 위한 국경 기관 간 협력
	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 하의 이동	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허용
	제10조 수입,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	형식 및 서류 요건, 사본의 수용, 국제표준의 사용, 싱글윈도우 선적 전 검사, 관세사의 사용,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, 거부된 상품, 상품의 일시 반입과 역내 및 역외 가공
GATT 제5조 (통과의 자유) 개선 및 명확화	제11조 통과의 자유	회원국 영역을 통과할 상품이 다른 수입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도록 함
신규도입 (세관협력)	제12조 세관 협력	수출입 관련 세관 간 정보 요청 및 요청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규정 등

□ Section II : 개도국·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규정

분류	조항	주요내용
개도국·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·차등 대우 규정	제13조 일반 원칙	개도국·최빈개도국에 대해 특별 및 차등 대우 제공
	제14조 규정의 유형	A유형 : 협정 발효시 즉시 이행 B유형 :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후에 이행 C유형 : 협정 발효 후 일정 기간 후에 이행하며 원조·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능력 획득 필요 * 개도국·최빈개도국은 Section1의 규정을 어떤 의무로 분류할지 스스로 결정
	제15조 A유형의 통보 및 이행	A유형의 통보 및 이행 절차
	제16조 B유형 및 C유형 확정 이행일의 통보	B유형 및 C유형의 이행일 통보 절차
	제17조 조기 경보 메커니즘	B유형 및 C유형 이행일의 연장
	제18조 B유형 및 C유형의 이행	B유형 및 C유형의 이행 절차
	제19조 B유형 및 C유형 간 이동	B유형 및 C유형 간 이동 절차
	제20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유예기간	분쟁해결절차 회부 유예 기간 부여 - 개도국 : A유형 2년 - 최빈개도국 : A유형 6년, B유형·C유형 8년
	제21조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	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
	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될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관련 정보	공여회원국 및 개도국·최빈개도회원국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원조 관련 정보

□ Section III : 제도적 장치 및 최종 규정

분류	조항	주요내용
제도적 장치	제23조 제도적 장치	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 및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 설립 또는 유지할 의무
최종 규정	제24조 최종 규정	협정의 이행, 개도국·최빈개도국의 A유형, B유형, C유형 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등